

희망저축계좌 || 사업 안내문

□ 지원내용(3년만기)

-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- 근로소득장려금: 10만원(1년차), 20만원(2년차), 30만원(3년차) 매칭하여 지원*
- *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
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 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Gateway 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 유지형 제외)

□ 가입 및 유지 기준

- 소득인정액이 **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**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(단위: 원/월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	2,392,013	3,932,658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	8,988,428
가입기준 (소득상한)*	1,114,223	1,841,305	2,357,329	2,864,957	3,347,868	3,809,185	4,257,497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	5,025,353	5,025,353	5,025,353	6,097,773	7,108,192	8,064,805	8,988,428

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
** 유지기준: 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
□ 해지요건

구 분		해지사유	지급액
지급	만기	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	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
	중도	- 가구의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초과 시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 -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 요청 시 → 중도지급 사유 발생 후 교육 이수*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* (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) 가입 1년 이내: 총 4시간 / 1년 이상~2년 이내: 총 7시간 / 2년 이상: 총 10시간	
환수	만기	- 3년 만기 후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	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
	중도	-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- 생계·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	

□ 유의사항

○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

-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~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*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.

*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~당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

- 입금일 착오,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.

[참고] 2025년 월별 본인 저축액 납입 일정

1월	'24.12.24(화)~'25.1.22(수)	7월	6.24(화)~7.22(화)
2월	1.23(목)~2.24(월)	8월	7.23(수)~8.22(금)
3월	2.25(화)~3.24(월)	9월	8.23(토)~9.22(월)
4월	3.25(화)~4.22(화)	10월	9.23(화)~10.22(수)
5월	4.23(수)~5.22(목)	11월	10.23(목)~11.24(월)
6월	5.23(금)~6.23(월)	12월	11.25(화)~12.22(월)

○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

-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·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
- 가입 후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, 근로·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참고사항

-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남동구청과 남동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◆ 희망저축계좌Ⅱ 관련 문의

- 남동구청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(☎ 032-453-2584)
- 남동지역자활센터(☎ 032-422-4318)